#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40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 김주영·정태호·박수현

이재관・이수진・조 국

김성환 · 박홍배 · 한정애

이용우 · 백승아 · 강득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노동을 단순히 경제적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권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 추어, 우리의 제도와 언어 역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절(May Day) 본래의 역사적 연혁과 국제적 취지에 부합하

도록 현재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노동운동의 보편적가치와 정신에 연대하고자함.

법률 제 호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
-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
-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 의 날"로 한다.

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⑥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로 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날